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7. 3. 13
개정 2017. 11. 13
개정 2018. 11. 22
일부개정 2020. 6. 30
일부개정 2020. 11. 24
전부개정 2021. 11. 26
일부개정 2022. 2. 22
일부개정 2022. 8. 11

일부개정 2023. 2. 22
일부개정 2024. 2. 27
일부개정 2024. 7. 29
일부개정 2024. 11.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단 장학생 선발·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 및 장학사업 종류) 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장학사업 종류를 구분하고 사업수행 및 장학생 관리를 위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반장학금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인재 장학생 : 학업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개정 2022.2.22.)

나. 성취장학생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및 청소년과 재진입 하는 만학도 장학생 (일부개정 2023.2.22.)

다. 다함 장학생 : 희망, 다자녀, 산업단지, 다문화, 새터민, 지역인재 장학생 (일부개정 2023.2.22.)

라. 예체능장학생 : 예·체·산업기능 분야 진로의 꿈을 위해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장학생 (일부개정 2023.2.22.)

2. 활동장학금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가. 학술연구 장학생 :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장학생

나. 활동 장학생 : 재단 인재양성사업 활동 장학생, 시흥시 청소년 성장주기별 맞춤형 인증프로그램 수행 장학생,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일부개정 2024.2.27.)

※ 삭제 (2024.11.26.)

3. 지정기탁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가. 시흥 사랑 장학생 :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장학금 지정기탁에 의한 장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매년 사업 시행 전 이사회에 장학사업계획(예산 및 인원)을 승인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3호는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1. 사업내용(사업목적, 대상, 예상인원, 재원 및 예산액 등)

2. 선발기준

3. 신청절차

4. 장학금 지급방법

5. 기타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장학금은 배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비성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선발대상) ① 재단 장학생 선발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법정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시흥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시흥시민 또는 부양자녀로서 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한 나이 시흥시 청소년(단, 지역에 없는 전공계열의 예·체·특성화 학교 재학생도 포함.)

2. 대학생은 국내 2년~ 4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 이외의 특이대상 발생시, 장학금 지원목적에 근거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 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는 제외한다.

1.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원격대학)

2. 「평생교육법」에 제31③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 조 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대학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등)

3.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우 제외(계약학과, 산업체, 산업체 위탁 등)

4. 각종학교(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제외)(일부개정 2024.2.27.)

④ 교사 및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부개정 2023.2.22.)

⑤ 장학생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⑥ 본인과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학업중단에 해당되어 학교 및 단체 기

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 (일부개정 2023.2.22.)

⑦ 지역 발전과 인재양성 및 재단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연구생. (일부개정 2023.2.22.)

⑧ 재단 장학생은 1가정 1인 선발과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준용하되, 장학사업 종류에 따라 일부 달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2.22.)

⑨ 활동장학생에 한해 주민등록이 시흥시에 1년 미만 되어있는 거주자, 관외 소재 재학생, 국외 국적자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일부개정 2023.2.22.)

제5조(선발인원 및 지급규모) ① 장학금의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액은 적립기금 이자 수익, 기부금, 지자체 출연금 등 매년 예산범위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하고, 선발 후 지급중지 반환 발생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중지 등의 사유로 미지급분의 장학금이 발생하는 경우 익년도 잉여금으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고 및 지원방법) ① 추천과 지정기탁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사업 수행시 많은 대상자가 접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지자체 및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장학생 신청 정보상의 개인정보 보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당사업연도 장학사업 종료시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폐기한다.

제7조(지원 및 추천) 장학생 지원과 추천은 재단의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며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2장 선발심사 및 장학금 지급

제8조(선발방법 및 심사) 선발방법과 심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장학생 선발인원 등은 제3조3항 장학사업 계획에 근거한다. 단,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 의결하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② 수혜자의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장학생선발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 심사결과를 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최소 7일전에 공지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한다.

④ 기타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르고,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재단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연구·활동비포함)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 하기 위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단 당연직 이사로 하며, 위원은 재단 이사 중 4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장학생선발 심사의결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 등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다.

1. 장학증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고,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서식]을 전달한다.

2. 장학금은 선발된 때부터 당해 학년 동안 지급하되, 본인 통장으로 지급(계좌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법정보호자)명의로 통장으로 지급(계좌송금) 하거나, 해당 장학생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장학부서로 송금할 수 있다.

3. 장학금액은 제3조(장학금 및 장학사업 종류)에 운영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4. 그 외 재단 목적사업과 관련한 기타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5. 지정기탁의 경우 기탁자의 기탁 의사에 따라 장학금은 관련 기관(행정복지센터, 학원 등)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제11조 (장학금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퇴학, 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군에 입대하거나 신체·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단,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유예 후 재지급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영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전역 후), 휴학증명서

- 신체·질병 : 건강진단서, 휴학증명서

4. 고등학생의 경우 관외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5.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6.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후 발견 시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7.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24.7.2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지 원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생년월일		소 속 (학 교)	
	주 소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장학생 선발 용도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장학생 본인 확인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재단 내 활용 2.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개 인 정 보 항 목		지원자의 성명, 주소, 소속학교, 전화번호, e-mail,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지원자 보호자의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		
보 유 및 이 용 기 간		장학사업 시행기간 내 보유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등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장학생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 상기인의 성명, 주소, 소속학교, 전화번호, e-mail,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와 상기인 보호자의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증 서

기탁자(단체)명-기탁 장학생만 해당

소속기관, 단체, 학적
성 명

위 학생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20 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시흥시의 작은 도움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의 씨앗이 되고 나아가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 : 고등학교 학년 반 (입학·재학·졸업)
 대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남,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H.P) :

E - mail :

본인은 20 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선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호자 주 소 :

장학생과의 관계 :

성 명 : (인)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 : 고등학교 학년 반 (입학재학졸업)
 대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남, 여)

생 년 월 일 :

본인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선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시흥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 장학생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 (단체,기관)명		학년 학과(반)	
추천사유	*추천내용(공적)이 많은 경우 페이지 추가 가능		

위 학생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 . .

○○○ 학교 (기관,단체) 장 (직 인)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장학생선발 심사의결서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규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20 년
장학생을 심사 선발함.

□ 의결사항 : 지원자 ()명 중 ()명 선발, ()명 탈락
* 예비후보자 ()명
 년 월 일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